

동경해상일동화재보험(주)서울지점 정보기술(IT)부문 공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제3항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해 공시합니다.

1. 공시 사유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제2항에서 권고한 정보기술부문 인력비율, 정보보호 부문 인력비율 및 정보보호예산비율 미충족

2. 전자금융감독규정 권고 수준

정보기술부문인력비율	정보보호인력비율	정보보호예산비율
총임직원수의 5%이상 (1명)	정보기술부문인력의 5%이상 (1명)	정보기술부문예산의 7%이상 (1800만원/7% 126만원)

3. 권고수준 충족 여부 및 현재 인력 및 예산 비율(공시일 현재기준)

정보기술부문 인력비율	정보보호인력비율	정보보호 예산비율
미충족	미충족	미충족
0%	0%	2.2%

4. 전자금융감독규정 권고 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

가. 정보기술부문 인력 비율의 미충족 사유

당사는 외국계 보험회사의 전업 재보험 지점으로써 재보험 거래와 관련된 일부 제한된 전자금융거래만을 수행하고 있는 관계로, 당 지점의 직원이 다른 업무와 겸임하고 있으며 외주업체를 통해 정보기술부문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나. 정보보호부문 인력 비율의 미충족 사유

당사는 외국계 보험회사의 전업 재보험 지점으로써 재보험 거래와 관련된 일부 제한된 전자금융거래만을 수행하고 있는 관계로, 당 지점의 직원이 다른 업무와 겸임하고 있음.

다. 정보보호 예산 비율의 미충족 사유

당사는 외국계 보험회사의 전업 재보험 지점으로써,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보보호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향후 사정에 따라 예산이 증가될 수 있음.

5. 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당사는 재보험 거래와 관련된 일부 제한된 전자금융거래만을 수행하고 있는 관계로, 이용자에게 특별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임.

본 공시화면은 2012년5월31일까지 제공하며 공시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본 홈페이지의 수시공시 란에서 공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12.04.30

동경해상일동화재보험(주)서울지점 대표이사 이와츠키 코지